

##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

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안병우·이상민·심성보·남경호·

김진성·오동석·정태영\*\*

1. 서문
2. 본격적인 전자기록시대에 대한 준비
3. 굿 거버넌스에 기초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
4. 공공기관 기록관 제도 및 운영의 혁신
5.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6. 민간 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진흥
7.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역량 등의 표준화
8. 결론

\* 이 논문은 '2012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진진대회' 및 '2012년 한국·몽골국제기록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안병우: 한국기록관리전문가협회 회장,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이상민: 한국 기록전문가협회 대외협력위원장, ICA/SPA 집행위원회 위원, 심성보: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단장, 남경호: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김진성: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객원연구원, 오동석: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국장, 정태영: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과정.

## [국문초록]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경제·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기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제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국정참여, 국정 투명성,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 전자기록  
대량이관,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 기록관체제 혁신,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민간기록관리 지원, 기록전문  
직 배치 확대, 기록전문가 역량 표준화

## 1. 서문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경제·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정부의 조직과 정책이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sup>1)</sup>

현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서 보듯이 고위급 정부기관에서 공공기록의 임의적인 폐기가 자행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기록관리가 크게 후퇴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좋은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록관리 없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공공기록의 충

---

1)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지향은 명확히 달랐으며,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과 실행도 확연히 달랐다.

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이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의 퇴보이다. 이로 인해 현 행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으며 새로운 정권을 노리는 정치인들은 현 정부와의 단절을 피하고 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은 그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공공기록관리의 주요 쟁점을 논의해왔으며, 2013년에 수립될 새 행정부에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가 되는 기록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기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가기록관리체제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본격적인 전자기록시대에 대한 준비

2000년대 이후로 기록관리 관련 컴퓨팅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확산되면서, 기존의 종이기록관리 환경에서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의 변화가 급속히 일어났다. 2006년에는 공공기록관리법 개정시 전자적 생산·관리의 강제화가 규정되었고, 2015년부터는 최초로 전 정부 차원에서 전자기록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대량 이관될 예정이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의 기록관리체제 전반과 처리과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관 단계 전반에서 전자기록의 생산·관리가 일반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의 전자적 생산과 전자적 기록관리 등을 강제하고 있는 현재의 전자기록 중심의 업무환경은 기록이 생산됨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장시켰고, 이는 기록의 이용 영역·방식의 확장에 획기적 발전을 이끌 것이다. 더 나아가 기록 생산의 강제는 해당 업무(기능)의 조정까지 확장할 수 있기에, 업무과정에서의 기록생산을 의무화, 강제함으로써 해당 업무들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효율 증대와 기관의 경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의 생산 단계에서 기록전문직이 담당할 역할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기능분류모델(BRM)의 관리, 기록물의 생산통제 등의 업무가 그것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관리의 각종 난제에 대한 대비를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구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의 이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기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망실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sup>2)</sup>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와 테스

트베드의 운영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응 체계 등이 특히 중요하며, 이것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미국 국가기록관리처(NARA)의 전자기록아카이브즈(ERA, Electronic Records Archives) 개발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5년 최초의 전자기록물 대량 이관에 대한 준비 또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량의 전자기록을 적시에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에 전자기록 이관을 다루는 전문위원회<sup>3)</sup>를 설치하여 제도적인 정비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또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한 것처럼 각급 기록관에도 전자기록 대량 이관 준비 조직을 구성하거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전문인력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체 정부기관들이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국가기록원 내에 소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전자기록 이관 관련 T/F조직으로는 이 문제를 다루기에 역량과 시간 모두 부족하다. 대통령 보고 혹은 국무회의 주재 안전으로 제출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범정부적으로 알려서 장기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전자문서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해당 기관 RMS 저장소를 통제로 들고 와서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전자문서 이관이 완전하게 이뤄지기 전까지는 처리과 단계의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에서 해당 전자문서가 삭제·변경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

2) 현재 구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의 경우, 기록관리시스템으로의 이관규격에 맞게 생산되지 않아서 제대로 이관되지 않고 있다. 별도의 용역(이관규격에 맞도록 기록정리 사업)을 통해서 온라인 이관하거나 혹은 종이로 출력하여 종이기록으로 이관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전자문서 이관 추진 가이드(2012.2)」를 작성·배포하여 각 기관별로 상황에 맞는 방법(전자적 자동 이관, 전자적 수동 이관, 종이출력 이관 3가지)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3) 이 경우 전자기록 이관대응 TF와 같은 단기사안 해결을 목표로 하는 형태보다 전자기록의 다양한 이동이나 제공, 장기보존 등에 대해 정책화·표준화하여 심의 및 집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해야 한다.

한편 쏟아지는 IT기술과 모바일과 웹을 이용한 사회적 의사소통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전자기록정보들이 나날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으며, 이들을 유형별로 기록시스템에서 획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실행할 필요가 있다. 공공 업무에 활용되는 E-메일과 기관 홈페이지 등의 웹 기록을 획득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기록도 새로운 형태의 기록관리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sup>4)</sup>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에서는 이미 이러한 기록들을 획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록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이와 같은 새로운 전자기록에 대한 기술적·시대적 동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기록전문가들은 응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수용하여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변경하거나 기록관리시스템 개발방법론을 고도화 하는 등 전자기록관리 관련 기술 동향을 잘 이해하고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도입을 통해 전자기록을 시스템 간에 물리적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도 있다는 논의에 대하여도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sup>5)</sup>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시스템(RMS),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 PAMS)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세부기능을 모듈화하여 개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위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고 개별 모듈을 높은 품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 등을 적극 추진하여 기록관리 관

---

4) 예컨대 박원순 서울시장의 트위터 소통 기록이나 서울시 수해 커뮤니티맵(다음 아고라 개선)에서 발생하는 기록은 서울시의 공공 업무를 반영하는 중요 기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현재 기록생산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의 저장소로 전자기록의 물리적 이관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동 API 규격 미준수, 이관 파일 생성시 일부 정보 누락, 대용량 파일 전송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런 정보시스템의 수준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

더하여 공공부분의 디지털 객체에 대하여 기록정보 개념과 기록관리 방법론이 결합해야 할 영역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기록관리 기능과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EA(Enterprise Architecture)에서의 기록관리 관련 개념의 적극적 도입·융합이나 영국 TNA에 OPSI(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가 통합된 사례 등 유관 동향을 적극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록생산·관리시스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업무 자체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이기록의 생산·관리의 관행을 전자기록 환경에서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전자적 생산·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종이기록 환경에서의 기록관리를 전자적 관리업무로 적극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생산·관리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의 품질이 사용자(특히 공공기관의 기록전문직)의 편의까지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진단과 책임/원인규명 및 개선이 필요하다.

### 3. 굿 거버넌스에 기초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

국가의 기록관리가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관리체계에서 최상위 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행정적 구조와 기능에서 공공기록관리법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적 거버넌스 원리가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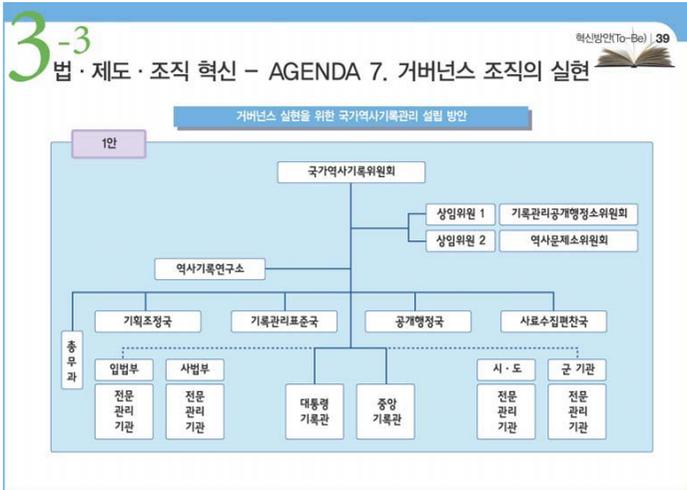
다수의 기관들에서 기록관리 업무는 전문적인 업무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데, 그러한 현실은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행정부처의 일개 소속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 기관에서조차 기록전문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지 않는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굿 거버넌스의 공공기록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조직과 리더십부터 부족한 것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국민에게 기록으로써 설명책임을 보여주고, 공공기록정보의 공개활용으로 국민이 국정을 감시하고 국정에 참여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의 체제이어야 한다. 굿 거버넌스체제를 위해서는 참여정부 시기 기록관리혁신을 논의할 때 제기되었던 방안을 그 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더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혁신위원회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의 민간 전문위원들이 주장한 ‘국가역사기록관리위원회’의 행정위원회화 방안은 1. 거버넌스형 위원회 구조, 2. 기존의 심의기능에 (구속력 있는) 정책 결정 및 집행기능의 확보, 3. 역사기록의 관리와 역사편찬 기능을 병행하기 위한 국사편찬위원회와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이 독립적 ‘국가역사기록관리위원회’ 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sup>6)</sup>

---

6)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국가기록관리혁신,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3-07, 2008, p.11.

〈도표 1〉 참여정부 로드맵 논의 중 국가역사기록관리위원회안)



‘국가역사기록관리위원회’ 방안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와 기능을 벤치마킹하여 독립적 기구에 의해 공공정보의 공개를 관리감독하고 공개 분쟁을 중재하는 방식과, 공공기관의 현행기록관리와 역사기록관리를 컨티뉴엄(continuum, 기록연속체)관리 개념으로 통합하여 한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관료 측은 행정자치부의 외청인 ‘국가기록청’으로의 독립기관화 방안을 제시하여 국가기록관리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독립성·효율성”을 명목상으로 강조했으나, 국사편찬위원회와의 병합을 “이질적인 기능 통합”이라 하여 반대했다. 이것은 국가적 기록유산의 적극적 형성(기록화), 공공행정의 기록화와 공개활용을 촉진하는 설명책임성 기록관리, 그리고 국가기록의 통합적 보존관리·이용이라는 현대의 국가기록관리가 지향하는 추세를

7)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국가기록관리혁신,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3-07, 2008, p.11.

경시한 행정조직상의 논리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기록관리혁신을 통한 업무 혁신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참여정부는 국가기록관리기구의 조직과 독립성의 문제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결국 ‘국가역사기록관리위원회’ 안과 국가기록청안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논의할 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인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문제는 여전히 핵심적 쟁점이며, 현실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과 표준의 수립, 기관간의 협력관계 구축과 운영 같은 공공기록관리의 주요 기능은 단일 기구에서 집중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연구, 교육, 지도감독 같은 또 다른 기능은 실행 범위와 역량 등의 문제 때문에 여러 기록관리 기관이 분산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기록물, 정부간행물, 전자적 정보객체 등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대상의 확대 여부 및 범위문제가 이러한 기능, 조직의 재편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서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조직체계 아래에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전문성을 다소나마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으로서 공공분야, 나아가 국가 전체의 기록관리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의 자문적 성격의 기구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시켜 심의와 권고를 할 수 있는 정책기구화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집행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운영에 기록관리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외부의 전문가나 전문가집단과 내용적 결합을 이루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방형 직위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갖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기록관리 전문가

기구로서 실질적인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시민사회 및 현장 전문가 참여가 확장되어야 한다.

#### 4. 공공기관 기록관 제도 및 운영의 혁신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정부사무관리규정상의 문서과와 구분되는 기록관의 기능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수의 공공기관은 문서과의 업무와 기록관의 업무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를 인식하고 있더라도 기록물평가심의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관의 기능이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각급 기관에는 기록관과는 별도로 문서과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록관의 업무를 문서과의 업무와 혼동하거나 병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서과의 업무와 기록관업무가 크게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문서과의 업무가 기록관 업무의 전부라고 인식하기도 한다.<sup>8)</sup> 전자기록 업무환경에서 문서과의 업무는 기록관에 통합·흡수되어야 마땅하다. 공문서의 효력 확인, 문서의 수발과 배부를 주 업무로 하는 문서과와 구별되는 기록관의 고유 기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은 해당 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해당 기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전문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sup>9)</sup> 이러한 업무는 기록관 영역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

---

8)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라 해당 기관의 처리과와 관련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RMS)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처리과에서 생산하는 기록을 미리 파악하고<sup>10)</sup> 중요기록물의 생산의무를 지정·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양질의 기록을 생산하게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도 이관할 수 있다.

이처럼 기록관의 기록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록관의 고유기능과 기록관이 협력·관여해야 하는 기능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 기록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인 기록관리기준의 관리뿐만 아니라 그 근간이 되는 정부업무분류체계(BRM)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개선 등 조직의 업무관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또한 기록관의 기록전문직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의 이관 대상인 업무 기록을 생산하는 처리과의 기록생산시스템에 대한 총괄적인 통제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위 두 가지 사안은 기관의 기획부서와 IT부서와의 업무 기능·권한의 조정을 필요로 하며, 나아가 행정부 각급 기관의 조직·인력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sup>11)</sup>

10) 이를 위해서 기관 전체의 조직, 업무, 규정, 현재까지 실제 생산된 기록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11)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 정부업무분류체계(BRM) 관리와 시스템 관리 업무는 각각 조직·업무관리부서, 전산관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록관리 업무는 대부분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보직이 자주 이뤄지는 행정기관의 특성상 해당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지속적인 전문 교육의 부재 등으로 단순 업무협조만으로는 전문적인 기록관리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가급적이면 BRM 관리, 시스템 관리, 기록관리 3가지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해야 하며,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해당 전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도 필요하다.

또한 기록관의 기록전문직이 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다른 기록관 기능과 운영의 쟁점이다. 이는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정보공개심의 회 운영,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의 작성 총괄 등의 업무를 기록관에서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제도적인 문제와 극소수의 현장 기록전문가가 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실행적인 문제로 구분된다. 한정된 인원의 기록전문직에게 기관 전체의 정보공개 업무를 추가하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기관의 업무기능분류, 단위과제 평가, 기록물 평가폐기심의, 기록물서고 배치관리, 기록물 이관 준비 등 기록관의 고유 업무가 방해받을 수 있다. 반면에, 적극적인 공공기록정보의 공유 및 확대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증진하고 기록을 통한 국정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기록관리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기록전문직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수도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기록전문직의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어 추가적인 정치적·행정적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다.<sup>12)</sup>

위에서 열거한 기능 이외에도 예를 들어 기관의 업무연혁을 정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감이나 백서 등의 편찬 기능, 문서와 행정박물, 시청각 자료 등의 전시를 통해 기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 기능 등이 그렇다.

이처럼 기록관 영역의 확장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

12)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2010)’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02년 10만 2,319건에서 2010년 32만 2,01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정보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도 점점 증가 추세이다. 따라서 기록관에서 정보 공개를 총괄할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지식 및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담당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기관의 법무담당부서에서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지원 혹은 인력지원 등의 협의를 추진하거나, 정보공개와 관련된 전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현재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도 버거워하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sup>13)</sup>

별도로 기록관의 기능과 역할을 연계·통합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1기관 1기록관 체제를 탄력적으로 변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독 기록관 운영이 극히 어려운 기관의 경우,<sup>14)</sup> 유사한 관련 기관들이 시설·인력·예산을 공유하여 연합기록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본부 기록관으로 기록관리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통합기록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연합 및 통합 기록관을 설치할 때에는 기록관 운영·발전이나 전문직 배치의 내용 및 필요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는 곤란하다기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 5.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공공기록관리법령은 16개 광역시와 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설치한 곳은 하나도 없다.<sup>15)</sup> 기록물

---

13) 기록전문가협회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현황(2011년 12월말 기준)을 보면, 기록관 설치대상인 994개 기관 중에서 전문요원을 배치한 기관은 373개에 지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373개 기관 중에서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기관이 상당수이고, 심지어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기관도 존재하고 있다. 기록관의 업무는 지속적·장기적인 관점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는 현실이며, 오로지 기관 문서고 내에 쌓인 기록의 '폐기'만 진행하면 된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결과인 것이다. 이런 기관에서는 기록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14) 예를 들어 기관 정·현원이 50인 이하인 경우가 그렇다.

관리기관을 설치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과 인력이다. 2007년에 각 시도가 산정한 예산은 서고를 비롯한 건물 신축 비용과 운영비로 1천억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대부분의 시·도는 재정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인력을 확보할 수도 없다는 것이 현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와 관련된 분위기이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 이외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과 행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실현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시·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건물 신축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식 이외에 리모델링 등의 대안을 적극 연구하여 시·도를 지원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총액인건비를 상향 조정하고,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원의 확보는 건축비 못지않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관평가에서 기록관리부서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전문요원으로 배치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평가요소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한편 시·도 차원에서는 각자의 현실에 근거하여, 전자기록 환경의 진전에 따른 향후의 보존수요 재책정, 기존 건물의 활용과 시설의 점진

---

15)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2012년 5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 설치를 추진하기로 발표하고 진행 중에 있다.

적 확충,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 및 그 외의 공공기관들과의 협력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스스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6. 민간 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진흥

현대 기록관리는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을 당연히 기록화의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에 따라 사회의 주요 사건이나 소수자·문화와 함께 기업, 대학, 종교단체, 병원, 노동조합, 스포츠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록화를 중시하고 있다.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마을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sup>16)</sup>은 민간기록의 중요성을 응변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 체계는 민간 부문의 주요 기록물만을 공공기록물 범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민간기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지정기록물제도(6건 지정),<sup>17)</sup> 기록사랑마을(4개 마을 지정),<sup>18)</sup> 민간기록조사위원회제도,<sup>19)</sup> 내고장 역사찾기,<sup>20)</sup>

16)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인 서울시의 마을 아카이브 구축 운동, 성미산 마을 아카이브, 산복도로 아카이브 등이 있다.

17) ‘국가지정기록물제도’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록물의 소유권은 소장 개인 및 단체에 있음.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위탁보존, 기록물 정리, 전산화 지원, 보존용품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 고려대학교 박물관, 1건

제2호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 고려대학교 박물관, 8건

제3호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15만 쪽

제4호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 한글학회, 17권

제5호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도산기념관, 17,000건

제6호 새마을 관련 기록물, 새마을운동중앙회, 3,015건

18) ‘기록사랑마을’은 2008년을 시작으로 민간 기록물의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기록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2008년 제1호 강

국가지정기록물 기획전시회<sup>21)</sup> 등을 통해 민간기록을 수집·관리 및 전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1997~2012년까지 176,910점의 민간기록을 수집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으나 공공기록물 체계로 포함되지 않은 많은 민간기록이 사라지고 있음에 더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식, 민간부문의 ‘주요 기록물’만을 공공기록물 범주에 포함하는 방식에서 민간기록물관리기관을 인정하고 민간기록물관리기관에 의하여 민간기록물이 관리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기록 관리를 법률 체계에 포함하여 전(全)사회의 기록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민간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개정은 민간기록물관리기관을 인정하고 민간기록물관리기관에 의하여 민간기록물이 관리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도서관법」의 사립공공도서관,<sup>22)</sup>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 
- 원 정선군 신동읍 조동8리, 2009년 제2호 경기 파주시 파주읍, 2010년 제3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 2011년 제4호 경북 포항시 북구면 오덕1리 덕동마을.
- 19) ‘민간기록조사위원제도’는 기록조사위원 위촉 규정에 근거한 임기 2년 명예직.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임기로 전국 지역별 총 185명이 제1기로 활동 중이나, 자원봉사형태로 조사활동비는 없음
- 20) ‘내고향 역사찾기’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실시하여 서울 송파구, 부산 수영구, 대전 동구, 제주, 경북 상주 등 총 5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고 총 42,438권을 수집하였음.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및 발굴·수집기록물의 유형별 목록정보를 「내고장 역사찾기」목록관리 표준SW에 등록하여 열람 제공중.
- 21) ‘민간기록의 숨겨진 보물을 캐다’(2012. 6~12).
- 22)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사립박물관<sup>23)</sup>처럼 민간기록물관리기관의 존재 자체를 법률에 규정하고 민간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기록전문직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sup>24)</sup>

이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민간기록물관리기관을 법률 체계로 등록하며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흥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민간기록물관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존시설 및 장비 등을 규정해야 한다. 민간기록물관리기관 중에는 디지털 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민간기록물관리기관<sup>25)</sup>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록의 영구보존을 위한 기술·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민간기록관리 지원 부서를 설치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업무에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역할조정 등을 위해 민간기록물관리기관협의체의 구성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민간기록관리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기업기록관리의 경우 「주식회사

---

2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립박물관도 비영리법인으로 하여, 각종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비영리법인 박물관을 우선 선정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사립박물관도 인증 후 3년간 학예사 경력인정기관 자격을 부여하여 학예사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시아경제(<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52315424850989&nvr=Y>) [cited 2012. 9. 20]

25) 민간기록은 병역거부아카이브(The Archive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 South Korea), 서태지아카이브(SEOTAJI Archive) 등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되는 사례가 많다.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sup>26)</sup> ISO 30300 시리즈 기록경영시스템 인증<sup>27)</sup> 등 관련 규제와 표준 동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업사료관리기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 7.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역량 등의 표준화

현재 약 300여 명의 기록전문가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sup>28)</sup> 그러나 각 기관 차원에서의 인력, 예산 운영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가 크게 미흡한 편이다. 또한 기록전문가를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임기응변식 편법은 공공기록관리의 안정성과 발전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기록전문직의 고용형태를 개선하도록 권장하거나 강제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총액인건비제도, 행정기

2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시행 2012.1.1] [법률 제9408호, 2009.2.3, 일부개정].

27) 국가기록원은 2011년 11월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ISO 30300 기록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for Records)을 2013년에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 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8) 전문직: 어떤 분야에서 고도(高度)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

전문가 :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전문요원 :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기록관의 설치 인정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기록물 평가심의회 전문요원의 참여가 법령의 필수 조항인 것처럼, 전문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업무를 시행령 이상의 수준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단위과제 설정 및 기록물 보존기간 분류와 같은 기록관리기준표의 작성과 변경, 공개재분류, 처리과 및 관할기관에 대한 교육,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업무'로 법령에 명시할 수 있다. 기록관에서 기록전문직들의 장기적·안정적 근속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모 기관 전반에 확산시킬 필요도 있다.

다음으로 기록전문직의 직무역량을 명세화하여 표준, 지침 등의 공식적인 기준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국적인 기록전문가협회가 수행하고 제시하는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전문가협회가 공동으로 기록관리 전문역량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록관리 전문가의 전문역량(competency)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와 사례가 존재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기록관리 전문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한 것인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모 기관과 기록물관리기관의 유형과 업무를 분석하여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권한 및 책임의 정도를 일정한 범주와 레벨로 세분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기록관리 전문역량에 관한 기준 수립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게 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인증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준은 또한 기존 기록관리자의 평생직무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공동의 전문역량 기준은 대학의 학부와 교육원, 대학원의 교육과정 인증제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기관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교육이수 점수나 승진 점수로 활용하고, 기록전문직 자격의 유지 및 승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법령상의 자격 기준 외에, 기록전문가(직)의 자격 증 제도 도입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수요를 위해 교육받은 기록전문가를 민간의 기록관리기관에서 채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기록전문직이 소속 기관이나 사회 전체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전문가들은 자신의 업무 전문성과 전문 윤리에 기반하여, 기록관리와 기록화를 통한 사회적 실천을 주도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록전문직의 권익 증진을 위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 조직(예: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발전을 위해 기록전문가들은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누구도 이러한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기록공동체 전체의 협력과 연대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8. 결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많은 기록전문가들이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새롭게 들어설 정부의 성격에 따라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과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현 정부에서 경험한 기록관리의 답보 내지 퇴보 상태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앞에서 살펴 본대로 대략 여섯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모두 기록관리의 발전과 그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과제들이다. 기록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는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시민을 향해서 진지하게 전개될 것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공공기록은 국정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정부와 시민의 소통을 촉진하며, 국가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지된 참여(informed participation)’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효과적인 수단이다. 다행히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의식의 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조에 힘입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ABSTRACT

# 2013 Records Regime Issues and Prospects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Korea

Ahn Byung-Woo·Lee Sang-min·Sim Seong-Bo·Nam Kyeong-Ho·  
Kim Jin-Sung·O Dong-Seok·Jeong Tae-Young

The year of 2013 is the first year that the new president takes the power and administrates the national affairs. In Korea, when the new president comes, the new administration brings big changes in the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e government management style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orientation and styles of the new presid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is a critical and effective business tool to establish and carry out the government policies as well as an essential tool for democracy. Modern democracy is based on good governance. Creation and free use of full and accurate public records makes the good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possible,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and surveillance of government activities for public good can work.

During the present administration, 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eople was cutoff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ffairs have been further limited. Furthermore, in the present administratio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was not regarded important. Whatever new administration comes, the year of 2013 is the time for the new administration

to realize again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nd put it back to the normal track.

Here are the major issues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to be concerned and resolved; ① to ensure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of the electronic records in the government and safe transfer of the massive electronic records, ② to establish an independent national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authority to be based on good governance, ③ to innovat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the public agencies including their agency records offices (RMO)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s (RMS) ④ to establish local government archives and document local government policies and activities ⑤ supporting and promotion for documentation of the total society as a public service ⑥ expanding employment of professional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standardization of professional competency and certification. In this paper, I will introduce the major issues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nd suggest the policies and solutions that the Korean records professionals considered and discussed. This analysis and suggestions are the outcome of our professional considerations and discussions.

**Key words:** people's participation, transparency of government business, records management for good governance, transfer of the massive electronic records, independent national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authority, innovation in agency records offices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s,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archives, supporting for documentation of the total society, expanding employment of professional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standardization of professional competency